

의안번호	2218329
의 퇴 인	이기현의원
회 답 일	2026. 6. 22.
추계번호	26C2162

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전시문화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등을 위해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9,000만원 (연평균 1,8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
 -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전시문화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안 제5조)	90	-	-	-	-	90	1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전시문화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시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전시문화산업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시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음(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4항)	
3	안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양성과 재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실시 등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국가는 전시문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전시공간연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시문화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5조(전시문화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안 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 현시점에서 합리적 추계 어려움
3	안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	- 현시점에서 합리적 추계 어려움
4	안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	- 현시점에서 합리적 추계 어려움
5	안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	- 현시점에서 합리적 추계 어려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10조의 경우 전시문화콘텐츠 관련 용역 발주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직접적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립박물관에서는 전시콘텐츠를 자체 개발하고 있으나, 이를 이를 기반으로 구현하는 전시 연출 제작 용역을 발주해 진행하고 있고, 2025년 기준 관련 용역 발주 사례는 다음과 같음

【표 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 연출 제작 용역 발주 사례(2025년)

사업명	예산액(백만원)
광복 80주년 기념 <기록> 특별전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190
광복 80주년 기념 <태극기> 특별전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392
광복 80주년 기념 <역사되찾기> 특별전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30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한편 제정안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기관에서 수행가능한 업무로서 전시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7조), 기술개발의 촉진(안 제8조) 및 국제협력의 촉진(안 제9조) 등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업 실시를 위하여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관련한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는 제외함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제정안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시문화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경우 정책연구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함
 - 문화체육관광부가 2023년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액(9,000만원)을 참고하여 같은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
- 첫 기본계획은 제정안 시행이 예상되는 첫 해인 2027년에 수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함

[표 3]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전시문화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안 제5조)	90	-	-	-	-	9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과장 직무대리)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na.go.kr